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26호 | 2024년 7월 31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정 상 희 수석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 요약 》

■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및 환불지연에 따른 판매자 및 소비자 피해 확산

- 티메프의 정산 지연금액은 25일 기준 2,100억원 가량으로 이후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회장의 경영정상화 약속이 있는 날 티메프 회생신청으로 경영정상화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

■ 티메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모회사의 무리한 기업인수로 인한 유동성 문제

- 큐텐이 기업인수를 위해 자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자회사의 유동성 문제 발생으로 정산 기일에 맞춰 정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으로 판매자에게 큰 손실 발생
 - 소비자에 대한 환불 또한 현재 PG사가 자체자금으로 결제취소 등에 따른 환불처리 진행 중
- 티메프의 재무악화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난 상황
 - 금융당국은 티메프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인지하고도 초기 이커머스 기업의 특징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경영개선협약만을 체결한 채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발표

-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 및 피해구제 지원 집중
- 판매자에 대해서는 5,600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 (평가) PG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 판매대금 회수 방안 등 명확한 사후대책 방안 마련 필요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시스템 마련을 통한 제도 미비사항 개선
 - 이커머스 업체의 경영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세부지표 마련 및 정산과 환불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은행 등 제3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서비스) 정산방식 활용 의무화 검토
-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및 공제조합 설립 활성화 지원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I. 티몬·위메프 사태 현황¹⁾

○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및 환불지연 문제 발생

- 정부 발표자료²⁾에 따르면 싱가포르 전자상거래업체 쿠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대금 정산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였지만, 쿠텐측은 전산상 오류로 인한 문제라는 언급과 함께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발표
- 쿠텐의 기존 입장 발표와 다르게 티몬의 무기한 정산지연 선언으로 인해 일부 판매자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확산
- 소비자가 티몬에서 결제한 항공권, 호텔 예약 등과 관련한 비용을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가 받지 못함에 따라 해당 여행사가 관련 계약을 취소

○ 티메프의 정산지연 및 환불지연에 따른 판매자 및 소비자 피해 확산

- 정부는 티메프의 정산 지연금액이 25일 기준 2,134억원 정도로 집계한 상황에서, 아직 집계되지 않은 6~7월 거래분의 정산기한이 도래할 경우 최대 1조원까지 언급될 정도로 지연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실제 대금 정산기일은 약 50~60일 사이로 6월과 7월 거래분은 정산 지연금액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집계된 지연금액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 환불과 관련해서도 티몬에 입점한 판매자의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일부 소비자만 환불을 받았을 뿐 상당수 소비자는 환불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
- 티몬 약 131억원, 위메프 약 43억원 환불

○ 쿠텐 회장의 경영정상화 약속과 회생신청

- 티메프 사태가 확산되자 쿠텐 구영배 회장은 7월29일 사재출연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입장을 발표 하였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당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여 경영정상화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
- 티메프는 기업회생절차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신청하였으며, 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을 법원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가 연기됨
-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대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 회생법원이 실무준칙으로 제정

1)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따른 현황자료는 관계부처 합동(2024.7.29.) 자료 참고.

2)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사태 대응방안, 2024.7.29.

-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모든 채권이 동결됨에 따라 판매자들은 미정산된 대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 티메프는 몇년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를 밟게 될 경우 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II.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

○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모회사의 무리한 기업 인수로 인한 유동성 문제

-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무리한 기업인수와 기업인수를 위한 자회사 자금 사용 그리고 인수한 기업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유동성에 문제가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싱가포르 회계기관에 공시된 큐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큐텐의 영업손실 규모는 2,306억원 정도, 누적적자는 4,314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티몬(2022년), 인터파크, 위메프(2023) 인수³⁾
- 이후 큐텐은 위시를 비롯한 AK몰 인수과정에 티메프 등 자회사에서 현금을 동원하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진 티메프가 판매자에게 정산기일에 맞춰 정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판매대금 400억원을 위시를 인수하는데 활용
 - 위메프의 2023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큐텐에 130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포함한 171억원 상당의 채권 보유 등으로 모회사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
- 모회사에 유동성 공급을 한 티메프 또한 기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줄 정도로 거래액에 비해서 재무구조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것으로 나타남
 -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등 큐텐 산하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거래액은 2023년 기준 6조9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6만개 이상의 업체가 입점⁴⁾
 - 2022년 실시된 티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5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890억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감사의견 제시

3) 조선비즈, 큐텐, 티몬 인수 직전 누적손실 4,300억원.. 인수 후엔 미공시, 2024.7.29.

4) 한국경제신문, 큐텐그룹 유동성 악화 "위시 인수가 기폭제".. 자금마련 급선무, 2024.7.23

- 2023년 실시된 위메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00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000억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사의견 제시
-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적으로 대주주의 자본확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티메프는 저가 수수료율 제공을 통한 판매자 모으기, 높은 상품권 할인판매 등 무리한 영업 방식을 진행한 결과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무악화 문제는 해결되지 못함
-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의 경우 5% 할인만 되어도 할인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티메프의 경우 10%, 20%까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
- 거래대금이 증가할수록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동성 위기에 따른 정산지연, 환불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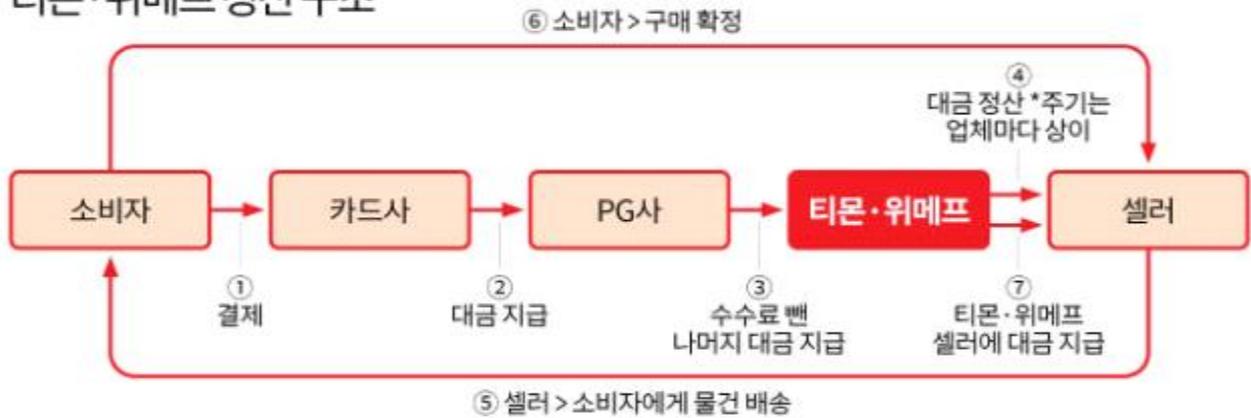
○ 상대적으로 긴 정산주기와 환불에 대한 신뢰 문제가 사태를 확대

- 그림1은 온라인 쇼핑의 일반적인 결제 과정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후 결제과정은 그림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음
- 즉, 카드사가 PG사(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로 결제금을 지급하면 PG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플랫폼 사업자(여기서는 티몬·위메프)에 지급하며, 최종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 가운데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
- 제3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예치기관에서 수수료만 취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예치기관에서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
-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대금 정산을 해야 하며,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티메프의 정산주기는 60일 정도로 길어 늦은 정산주기에 대한 문제점 발생
-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주기는 짧게는 3일 늦어도 10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티메프의 긴 정산주기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환불은 앞의 설명과 반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티메프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환불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 PG사가 결제취소, 신규결제 등을 못하게 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문제가 결제취소 및 환불문제로 이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상황처럼 PG사가 결제취소를 허용하게 되면 티메프를 통해 환불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PG사 자체자금으로 결제취소에 따른 환불액을 지급

-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PG사가 빠지게 될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 사업자 또는 카드사에 직접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환불지연 문제를 일정 부분 크게 확대시킴
-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PG사 및 카드사의 결제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티메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PG사 등이 대신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1. 티몬·위메프 정산구조]

티몬·위메프 정산구조



출처: 뉴스핌(2024.2.28.). 티몬·위메프 사태는 왜 벌어졌을까

○ 티메프의 재무악화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공백

-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의 경우 상장폐지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제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감독원은 티메프에 대해서 2022년부터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만 진행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관련하여 티몬(2022년)과 위메프(2023년) 모두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다는 우려를 제기한 만큼, 2022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던 금융당국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금감원이 티메프에게 지난 12월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서에 따르면 경영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 경영개선명령 까지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영개선명령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총자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취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몇년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명령을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④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문제가 있고,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문제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관련 조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판매대금 정산과 관련하여서도 금융당국이 의지가 있다고 하였을 경우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에서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III.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책 및 평가

○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 및 피해구제 지원 집중

-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의 적극적 협조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
-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상품제공 또는 환불 협조 유도
-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

○ 판매자에 대해서는 5,600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 중진공, 소진공 등을 통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중진공 10억원(3.4% 변동금리), 소진공 1.5억원(3.51% 변동금리) 지원
- 신보, 기보와 3,000억원+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요청
-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추진 및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 지원

○ 정부 대책⁵⁾에 대한 평가 및 추가제안

- 정부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티메프에게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특히 판매자를 위한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PG사 및 카드사에 대한 지원, 판매대금 지급 방안 등 명확한 사후 대책 마련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음
-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정책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
- 소비자에 대한 정부 정책: 소비자가 받은 금전적 피해를 중심으로 정책마련이 집중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 검토 필요
- 소비자 정책에 대한 추가제안
 -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개입한 상황에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취소된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방안도 티메프 집중점검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
 - 예를 들어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취소가 된 이후 재예약 시 발생 가능한 추가금액, 해당 일정에 받았어야 할 서비스가 취소되어 받지 못하게 된 피해 등도 검토할 필요
- 판매자에 대한 정부 정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출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대출이자 또한 소진공(3.51%)과 중진공(3.4%)이 다르게 책정되어 형평성에도 문제 발생 가능
- 판매자 정책에 대한 추가제안
 -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정부에서도 언급하듯이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대출시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자를 적용해야 할 경우 해당 이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티메프가 부담해야 함
 - 정부가 판매자를 위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판매자의 매출채권을 구입하고,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티메프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검토
 -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에서 청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비춰짐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판매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검토
- PG사 및 카드사에 대해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카드결제 취소 등의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현재 PG사 및 카드사가 티메프를 대신하여 직접 환불액 등을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이 티메프에 대해 가지게 되는 채권 또한 티메프의 회생신청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중부담을 안게 된 상황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티메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 등도 필요

5)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사태 대응방안, 2024.7.29.

IV.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시스템 마련을 통한 제도 미비사항 개선

- 티메프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 등이 언급됨에 따라 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 발견시 이를 총괄하는 금감원장을 비롯하여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함
- 티메프가 첫 번째 경영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두 번째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티메프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행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금감원이 제대로 관리를 하였는가에 대한 감사 필요
- 자산총액과 매출액만을 요건으로 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 외국회사의 국내회사 기업결합 시 자산총액 3,000억원, 매출액 300억원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큐텐이 티몬을 인수하기 전 시점 영업손실과 누적손실이 각각 2천억원과 4천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영업이익도 기업결합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자기자본비율 문제, 금융사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세부지표 마련 필요
- 티메프의 자본잠식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초기 투자가 많은 관계로 자본잠식 상태가 대부분인 경우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응답
-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개선 관련 규정 미이행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적절한 벌칙조항을 마련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경영개선 권고 미이행시 경영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 미이행시 경영개선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최종적으로 경영개선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 허가취소 등의 벌칙이 부과되는 형태
- 플랫폼 결제구조상 판매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산과 환불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해당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대규모유통법(제8조)에는 대기업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할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현재 상품판매를 중개하는 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닌 상황
- 티메프 사태는 늦은 정산주기, 정산지연 및 환불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로 관련하여 사기 및 횡령·배임죄* 검토도 가능함에 따라 이를 감안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은 시급
- *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정산주기가 늦었을 가능성
- 마지막으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 따라 판매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필요

- 은행 등 제3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 서비스) 정산방식 활용 의무화 검토
 -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전자상거래법 제13조②11)에 따라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해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해서 해당 방식 사용 의무화 검토
 - 현재 제3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는 현금결제에 한해서 의무화 되어 있으며,
 - 올해 9월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 제3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보호장치로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구매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판매자에게는 결제대금 지급이 보장되고 소비자에게는 환불의 편의성을 제공
 -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 중개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정산주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 확보의 이점을 가질 수 있음
 -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정산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늦은 정산주기로 인한 타용도로 자금 활용 가능성, 정산까지 해당 자금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 등 다양한 문제점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정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확정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 검토 필요
 -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결제자금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확정할 경우 특별히 시간을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
 - G마켓, 11번가 등의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구매확정 이후 1~2일 안에 정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7일 이내에는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검토
-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및 공제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4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체결 및 공제조합 설립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플랫폼 제공 사업자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받게 되는 상황임에도 오픈마켓 형태의 전자상거래기업은 특별히 담보로 걸 수 있는 유형자산이 없어 현금 확보도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를 위하여 해당 플랫폼 제공 사업자는 판매자를 위한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공제조합 설립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